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 한국 vs. G5 -

SUMMARY

한국의 최저임금은 G5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제도가 경직적이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필요

문제점

임금 수준

- '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韓 62.5% vs G5평균 48.8%
- 최근 5년간('16 ~ '21년) 최저임금 총인상률 韓 44.6% vs G5평균 11.1%

개선방안

- 임금수준과 속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 결정

적용 제도

- 적용방식** 韓 단일적용 vs 美·日·英은 지역·업종·연령으로 구분
- 주휴수당** 韓 지급의무 있음 vs G5 제도 없음
- 산입범위** 韓은 G5와 달리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 최저임금 불포함
- 결정체계** 韓 최저임금 결정 시 노사 간 갈등 심화 vs 美 연방의회 결정, 佛 정부 결정

- 업종·지역 차등적용
-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포함
- 현물 숙식비 최저임금 포함

위반시 제재

- 韓 징역형 및 벌금형 부과 vs G5(미국 제외) 벌금형

- 징역형 폐지

검토배경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투자위축, 고용축소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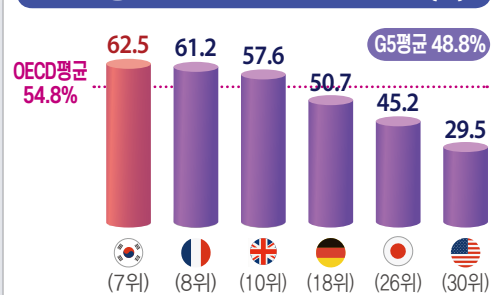
-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투자위축과 고용축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
- * '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일자리 15.9만개 감소, '19년 10.9% 인상으로 27.7만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경연, 2021)
- *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미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년 160.8만명에서 '19년 153.8만명으로 7만명 감소(통계청)

임금수준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대비) 韓, 62.5%로 G5 비교 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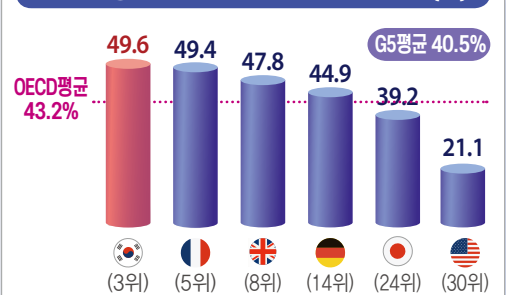
- ❖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주1)} 중 중위임금 대비 7위(62.5%), 평균임금 대비 3위(49.6%)
- * 주: OECD 전체 38개국 중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8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제외

'20년 중위임금^{주1)} 대비 최저임금 비율(%)



* 주1) 전 근로자 임금으로 순위 매길 때 가운데 값
2) 1위 콜롬비아 92.3%
* 자료: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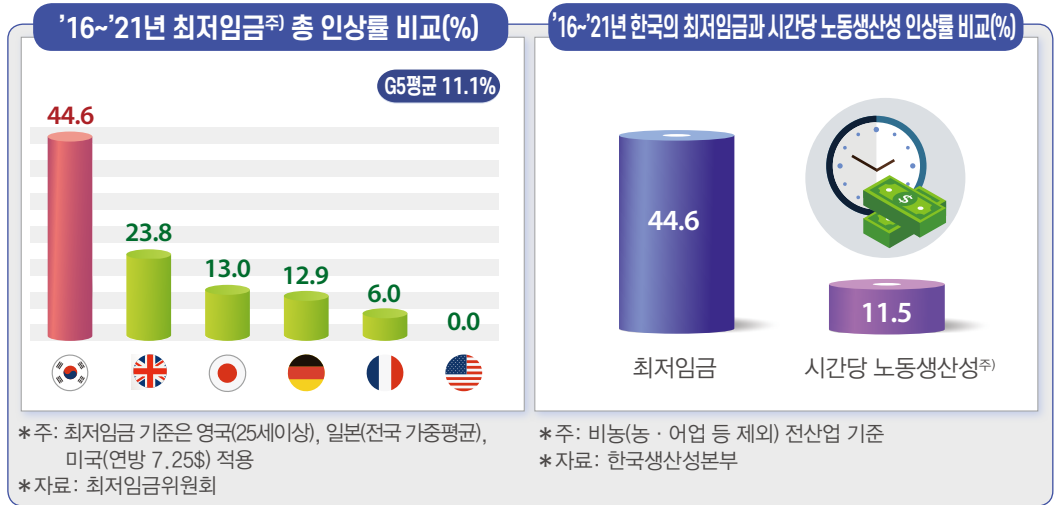
'20년 평균임금^{주1)} 대비 최저임금 비율(%)



* 주1) 전 근로자 임金的 평균값
2) 1위 콜롬비아 61.3%
* 자료: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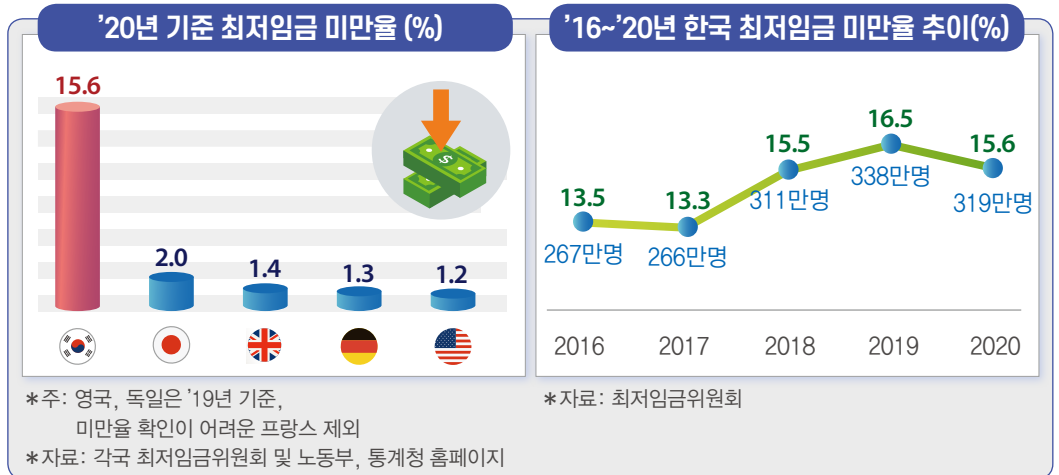
5년간('16~'21년)
최저임금 총인상률
韓, 44.6%로
G5대비 최고

❖5년간('16~'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총인상률은 44.6%로, G5평균(11.1%)의 4배
❖5년간('16~'21년) 최저임금이 총 44.6% 인상될 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3.9배 수준



최저임금 미만을
韓, 15.6%로
미국(1.2%)의 13배
높은 수준

❖한국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미만율이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 대비 높음



적용제도

美·日·英,
지역·업종별 등
차등 적용

차등적용 한국은 단일적용하는 반면, 미국 지역별, 일본 지역·업종별, 영국 연령별로 구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단일적용	지역별 구분	지역·업종별 구분	단일적용	연령별 구분	단일적용

* 자료: 김강식,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2017

韓, G5와 달리
주휴수당 제도 有

주휴수당

한국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나 G5는 없음
* 한국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주휴수당 제도

	O	X	X	X	X	X

* 자료: 권영국,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한 소고」, 2019

韓, G5와 달리
현물 숙식비
최저임금 제외

산입범위 (현물숙식비)

한국은 G5와 달리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현물숙식비 최저임금 산입여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월 기본급	0	0	0	0	0	0
숙박비(현물)	X	0	0	0	0	0
식비(현물)	X	0	0	△ ^{주)}	X	0

*주: 독일은 농·임업 등에 종사하여 계절특수성에 영향받는 계절근로자만 현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결정
美, 연방의회
佛, 정부 vs
韓,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체계

- 미국은 연방의회, 프랑스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
- 일본·독일·영국의 경우 한국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지 않아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있음
- *'19년 WEF 노사협력순위(141개국): 일본(5위), 미국(21위), 독일(30위), 영국(33위), 프랑스(93위), 한국(130위)
- *한국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인상을 합의가 이뤄진 횟수는 7회 불과(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체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결정주체	최저임금위원회	의회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저임금위원회 ^{주)}	노사의견 청취 후 정부 결정
결정방법	노·사·공 합의	노·사·공 합의	노·사·공 합의	노·사 합의	노·사·공 합의	

*주: 영국은 저임금위원회 의결내용을 정부가 수정·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음
*자료: 김강식,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 2018

최저임금 위반 시
韓, G5(미국제외)와
달리 징역·벌금형
부과

위반 시 제재

- ❖ 한국은 G5(미국제외)와 달리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
- *미국은 최저임금을 고의로 위반했을 때, 징역 6개월 부과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기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징역	3년	6개월(고의 위반 시)	X	X	X	X
벌금/과태료	2천만원	1만달러 (1,145만원)	50만엔 (521만원)	50만유로 (67,670만원)	2만파운드 (3,150만원)	1,500유로/1인 (203만원)

*주: 2021년 기준환율 적용 *자료: 각국 법률, 최저임금위원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최저임금
개선 필요

개선방안

- 임금수준** • 근로자 전체임금, 경제성장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
- 적용제도**
 - 기업 지불능력 고려해 업종·지역별 구분, 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 특례업종을 지정해 최저임금의 80~90% 적용
 -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 현물 숙식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 위반 시 제재**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임을 고려해 징역형 폐지

쟁점과 체크포인트

- ✓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무리한 인상 자제 필요
- ✓ 지역·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부작용 최소화

■ 내용문의: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02-3771-0480), 강지연 과장(0450), 김혜진 연구원(0424)



글로벌 싱크뱅크 FOCUS



WORLD ECONOMIC FORUM

Over-50s are resigning en masse -new research explains who and why

영국의 50대이상 대량퇴사에 관한 연구

Carlos Carrillo-Tudela
2022.4.29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4/over-50s-are-resigning-en-masse-new-research-explains-who-and-why/>

SUMMARY

최근 영국은 장년층(50~65세)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는데, 이는 장년층 근로자의 은퇴 증가 및 재취업을 거부하기 때문

- *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 이전 2019.12월 323만명에서 2022.1월 353만명으로 30만명 증가
- *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증가한 계층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저소득층 (연£18,000~£25,000)에서 주로 발생

은퇴 사유는 쇠퇴하는 산업에 대한 비전 부재, 재택근무 불가로 전염병에 대한 건강보호,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 등 때문

- * 은퇴가 증가한 업종은 공정플랜트 및 기계조작업(쇠퇴하는 산업), 영업 및 고객서비스업(재택불가능), 도소매업(낮은 임금)

5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브렉시트로 인한 유로존 근로자 공급 중단은 노동력 부족을 심화,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자 증가는 정부의 복지지출 압박 우려

- ▶ 정부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제도 확대가 필요

The Heritage Foundation

Why America's Labor Force Decline Matters Beyond Current Supply Shortages, Rising Prices

미국의 노동력 감소: 공급부족, 물가상승, 그 너머의 문제

Rachel Greszler
2022.3.29



<https://www.heritage.org/jobs-and-labor/commentary/why-americas-labor-force-decline-matters-beyond-current-supply-shortages>

SUMMARY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16~64세)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노동인구(25~54세) 경제활동참가율도 감소 중

- *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점이었던 2000년 1월 67.3%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2월에는 62.3%로 5.0%p 하락
- * 핵심노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000년 1월 84.4%에서 2022년 2월 82.2%로 2.2%p 하락

2030년에는 마지막 베이비붐(1946~64년 출생) 세대들의 대량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

- * 코로나 이전에는 연평균 1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했으나, 코로나 이후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2021년에는 175만명이 은퇴

노동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 및 정부재정, 국가안보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고용 장려 필요

- * 예를들어, 복지제도(entitlement program)의 일부 세원은 근로자로부터 100% 충당하고 있어 노동력 감소 시 향후 채용 고갈 가능성
- * 노동력 감소는 군서비스 인력 부족, 방위산업 약화 등을 초래하여 국가 안보에 부정적
- ▶ 정부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업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대신 재교육, 업무경험 제공 등 일에 대한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필요